

Arbitration in Singapore

Singapore – A Dynamic Cosmopolitan City State With Excellent Infrastructure And Communications



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Contact us:

32 Maxwell Road

#02-01

Singapore 069115

[T] 65 6221 8833

[F] 65 6224 1882

[W] www.siac.org.sg

[E] corpcomms@siac.org.sg

What Singapore has to Offer

- 최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국 법정지로 그 중립성을 인정받아 상위 3위에 오름
- 훌륭한 법률, 기술 전문가와 더불어 다양한 외국어에 유창한 다문화 사회
- 동남아시아 중심에 위치, 매주 185개 도시에 4,000여회의 항공 운항
- 개방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으로 7,000여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 상주
- 싱가포르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법률은 UNCITRAL 모델 중재법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으며, 국제적으로 널리 인용되는 중재 규범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개정, 정비되고 있음
- 싱가폴은 뉴욕협약 가입국으로 SIAC의 중재판정은 전세계 140여개 국가에서 강제집행 가능
- 국가별 사법 시스템 평가에서 최상위를 기록한 싱가폴 사법부가 뒷받침하는 선진화된 법률체제
- 싱가폴 법원은 국제 중재 당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과 중재절차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보장
- 당사자들은 중재 대리인을 국적에 관계없이 선임할 수 있음
- 외국 법률 회사가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제약 없음
- 싱가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취업 허가증 없이 싱가폴 내에서 중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아시아 최대 분쟁해결종합센터인 맥스웰 챔버스 내 최고급 중재심리실과 최신 시설 설비 제공
- 여타의 주요 중재센터와 비교, 저렴한 중재비용

왜 SIAC를 선택해야 하는가?


입증된 집행기록을 보유한 명성있는 중립적 중재기관

SIAC는 1991년 비영리 민간 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글로벌 비즈니스 사회에 중립적 중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SIAC의 중재판정은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 등 여러 다른 뉴욕협약 가입국 법원에서 강제집행 되어 왔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제기관

- SIAC를 이끌어 나가는 이사회는 호주, 인도, 한국,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그리고 미국 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중재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중재실무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 이사회는 국제 중재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국제자문위원회로부터 최근의 동향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제공 받는다.
- SIAC는 30여개국에 걸쳐 280여명의 숙련된 국제중재인단을 보유하고 있다.
- SIAC 사무국은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 그리고 미국 출신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SIAC사무국은 중재 이용 당사자들이 속한 각국의 기업 환경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 SIAC 사건의 85%는 국제중재 사건이고, 2009년 SIAC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45%는 양당사자 모두 외국 국적인 사건이었다.
- SIAC 중재규칙은 국제중재분야의 최고 실무자들과 중재 당사자들이 검증하고 입안하였으며 영미법과 대륙법 체계에서 모두 통용될 수 있는 규칙이다.

분쟁의 효율적 해결

- SIAC는 대내외적으로 검증된 중재규칙을 제공함으로써 절차를 전략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등의 위험 요소가 적다.
- 당사자들이 SIAC 중재규칙, UNCITRAL 중재규칙 또는 임의중재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인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SIAC가 중재인의 전문성, 자질 그리고 실적 등을 고려하여 중재인을 선정한다.
- SIAC의 중재인 위촉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SIAC는 체계적인 중재인 관리와 중재인 자질 향상을 통해 당사자의 중재인 기피 혹은 중재인의 중재절차 지연을 방지한다.
- SIAC는 중재인 선정 기간을 협상하고 결정한다.
- SIAC는 다음을 포함하여 중재와 관련된 모든 재정 업무를 관리한다.
 - 정기적인 회계 관리
 - 중재비용 예납 징수
 - 중재인 수당과 경비
- SIAC는 정관에 따른 투명한 재정 관리를 통해 대리인이 의뢰인에게 중재비용, 소요기간, 중재단계별 소요 비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SIAC는 14개의 중재심리실과 12개의 회의실을 보유한 맥스웰 챔버스에서 중재심리를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 SIAC는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중재절차를 관리, 감독한다.
- SIAC는 중재판정문을 심사함으로써 집행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SIAC의 관리요금은 여타의 주요 국제중재기관들과 비교할 때 저렴하다. 



“SIAC는 30여개국에 걸쳐 280여명의 국제중재인단을 보유하고 있다.”



Contact us:
32 Maxwell Road
#02-01
Singapore 069115
[T] 65 6221 8833
[F] 65 6224 1882
[W] www.siac.org.sg
[E] corpcomms@siac.org.sg



Administration Fees

Sum in Dispute	Administration Fees
Up to 50,000	3,250
50,001 to 100,000	3,250 + 2% excess over 50,000
100,001 to 500,000	4,250 + 1% excess over 100,000
500,001 to 1,000,000	8,750 + 0.75% excess over 500,000
1,000,001 to 2,000,000	12,750 + 0.5% excess over 1,000,000
2,000,001 to 5,000,000	18,250 + 0.25% excess over 2,000,000
5,000,001 to 10,000,000	26,500 + 0.125% excess over 5,000,000
10,000,001 to 50,000,000	33,500 + 0.075% excess over 10,000,000
Above 50,000,000	66,500 (maximum)

Arbitrator's Fees

The arbitrator's schedule of fees is effective as of 1 July 2010. The fe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schedule is the amount payable to one arbitrator. All sums stated are in Singapore dollars.

Sum in Dispute	Arbitrator's Fees
Up to 50,000	5,500
50,001 to 100,000	5,500 + 12% excess over 50,000
100,001 to 500,000	12,000 + 5.5% excess over 100,000
500,001 to 1,000,000	35,000 + 4% excess over 500,000
1,000,001 to 2,000,000	59,000 + 2% excess over 1,000,000
2,000,001 to 5,000,000	81,000 + 1% excess over 2,000,000
5,000,001 to 10,000,000	120,000 + 0.5% excess over 5,000,000
10,000,001 to 50,000,000	148,000 + 0.25% excess over 10,000,000
50,000,001 to 80,000,000	263,000 + 0.1% excess over 50,000,000
80,000,001 to 100,000,000	297,000 + 0.075% excess over 80,000,000
Above 100,000,000	314,000 + 0.06% excess over 100,000,000



Contact us:

32 Maxwell Road

#02-01

Singapore 069115

[T] 65 6221 8833

[F] 65 6224 1882

[W] www.siac.org.sg

[E] corpcomms@siac.org.sg



Where The World Arbitrates

SIAC 는 당신의 분쟁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SIAC는 지리적 이점을 보유한 싱가포르에 위치하며 전세계에 걸쳐 280여명의 숙련된 중재인을 보유하고 있다.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 그리고 미국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SIAC 사무국은 중재인이 분쟁의 실질적인 쟁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중재절차를 관리한다.

SIAC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 저렴한 중재비용, 숙련된 사무국을 바탕으로 저비용 고품질의 중재서비스를 제공한다.

www.siac.org.sg 를 방문하여 SIAC이용자가 나날이 급증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SIAC 표준 중재 조항

계약의 성립, 효력, 해지 등을 포함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인 싱가포르에서 SIAC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SIAC의 중재규칙은 이 표준 중재조항의 일부로 본다.

중재판정부는 _____인의 중재인(들)로 구성한다.

중재에 사용되는 언어는 _____로 한다.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32 Maxwell Road

#02-01 Singapore 069115

T: (65) 6221 8833 F: (65) 6224 1882

E: corpcomms@siac.org.sg

[인터뷰] 싱가포르국제중재원 민나잉오 사무총장

"국제중재 발전, 법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국제중재 중심지역으로 성장한 데에는 법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싱가포르법원이 중재에 대한 우호적인 판단과 입장을 보이는데다, 중재절차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관련 외국당사자들이 안심하고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원(SIAC)의 민나잉오(39) 사무총장은 국제중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은 물론, 정부와 법원으로 구성된 잘 짜여진 ‘패키지’가 구성돼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김앤장 법률사무소 초청 조찬세미나 직후 그를 만났다.

“최근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의 중재법을 세계적인 기준에 맞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중재업무 관련 수익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면서 외국변호사와 중재인들이 싱가포르에서 자유롭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국제중재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중재 및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를 위한 대규모 시설인 맥스웰 챔버스를 신축하는 등 국제중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민 사무총장은 이 같은 국가지원은 향후 국가경제 및 수익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싱가포르가 국제중재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먼저 싱가포르가 접근성이 좋고, 인도네시아 동남아 등의 경제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과 인접해 있다는 점, 전 세계적인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점, 영어가 공용된다는 점과 문화적으로도 동서양 양쪽에게 친근하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SIAC는 1991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민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37세의 젊은 나이에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그는 앞으로 5년의 임기동안 SIAC를 보다 세계적인 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SIAC를 아시아지역에서의 가장 선호되는 중재기관으로 확립시키는 것이 당장의 목표이고, 더 나아가 유럽의 런던국제중재법원(LCIA)과 국제상공회의소(ICC)중재법원 등과 같은 세계적인 중재기관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민 사무총장은 한국은 국제중재시장에서 빠르게 발전하여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SIAC사건 중 한국이 중국에 이어 인도와 함께 두 번째로 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SIAC 9명의 이사 중 1명을 한국의 윤병철 변호사(김앤장)로 위촉하게 되었지요. 현재 한국 변호사들의 역량이 외국 대형 로펌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법률에 대한 지식이나 변론실력 또한 국제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중재무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거듭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재에 친근한 환경조성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2010 Rules are now available in Korean

21 February 2011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SIAC 2010 Rules](#) is now available.

SIAC would like to thank Sunkyung Shin and Jihye Hong of Shin & Kim in Seoul for translating the 2010 Rules.